

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(제41조 관련)

명 칭	관 할 구 역
수도권대기환경청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은 제외한다), 경기도 김포시·고양시·의정부시·남양주시·구리시·하남시 · 성남시·의왕시·군포시·과천시·안양시·광명시·시흥시 · 부천시·안산시·수원시·용인시·화성시·오산시·평택시 · 파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이천시·광주시·안성시·여주 시·포천시